

## 예비대학생 학점인정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의 3에 의한 예비대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① 학점인정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수시모집 입학전형과 편입학에 합격한 자로서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본교에 입학한 자
2. 본교에서 정한 외국인 입학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로서 현지 또는 본교에서 예비대학 외국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교에 입학한 자

**제3조(이수신청)** 예비대학생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 당해 학기초에 [별지 제1호 서식]의 학점취득인정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교학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조(학점인정)**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점인정은 해당교과목의 성적이 80점(B)이상 이어야 한다.

**제5조(이수교과목 및 학점)** ① 예비대학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신청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해당 교과목 영역(교양, 전공, 일반)으로 인정한다.

② 학점취득을 인정받은 교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졸업학점 성적평균평점에 계산한다.

③ 예비대학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.

**제6조(예비대학교육과정)** 예비대학교육과정의 개설교과목 및 학점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학점 범위에서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(2008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 예비대학교육과정 학점취득인정신청서]

**예비대학교육과정 학점취득인정신청서**

				결 재	담 당	팀 장	처 장
신 청 자	성 명		학 번		주민등록번호	-	
	소 속	학부(과)		전공	학년		
학점취득인정신청내역							
교과목명		학점		성적(평점)	취득학기	수강신청 ID	
<p>예비대학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 청 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학부(과)장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학    장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</p>							
<p><b>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</b></p>							
<p>※ 유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점취득인정신청은 신청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.</li> <li>2. 취득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, 졸업학점 성적평균평점에 포함된다.</li> <li>3. 예비대학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의 재수강은 불허한다.</li> <li>4.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중 학점취득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한다.</li> </ol>							